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57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19. 9. 23(월) 16:07 ~ 19:03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윤주 위 원
강홍구 위 원
김기봉 위 원
나종영 위 원
이승정 위 원
이희경 위 원
조기숙 위 원
최창주 위 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9월 정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6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6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오늘은 위원 10인 중에서 9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7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3페이지입니다.
255차 회의에서는 2개의 의결안건이 모두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개최된 256차 위원회에서는 1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혹시 보고를 받으신 안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6개의 의결안건 중에서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19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최혜주 공연기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2019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761호입니다.
6페이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건명은 2019년도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이고요. 5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신규로 도입된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에 대해 의결안건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공연예술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신청접수를 받았고 분야별 심의가 끝나서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의 (3)번의 내용을 보시면,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지원결정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표는 10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31건이 신청했고 그 중에서 5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5월 31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 7월 1일에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연극 226건, 무용 73건, 음악이 73건, 전통예술 59건으로 총 431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지원심의를 적격자 지정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심의위원 구성은 분야별로 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각 분야별 심의위원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지원심의회 회의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연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사업이고요. 그에 따라서 1차 서류심의를 진행하고, 서류심의가 진행되기 전에 모든 심의위원들께 100% 사전 전수검토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심의결과 2차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가 최종적으로 9월 6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원심의 기준 및 가중치는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보고를 드렸던 중장기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4)번의 심의선정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신청건수와 선정건수가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431건 중에 연극 226건, 무용 73건, 음악 73건, 전통예술 59건

이 신청했고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해서 되는 데만 되는 것보다 신진이나 발전해 나가는 단체들에게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망단체와 중견단체의 2가지 트랙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선정된 52건 중에 유망단체가 18건, 중견단체가 3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진이나 유망단체가 35% 전도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입니다.

지원배정액을 보시면 ‘계획’이 있고 ‘수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지원배정 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지원신청건수와 신청액수에 따라서 배정하는데요. 4개 분야의 심의 중에 음악분야 심의를 제일 먼저 했더니 음악분야에서는 당초 배정받은 9억 원을 다 선정하지 않고, 인터뷰 심의까지 마치고 보니까 다 선정할만하지 않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6억 30만 원만 선정을 하였고요. 남은 잔액은 다른 사업에 추가배정을 할 수 있도록 음악분야 심의위원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원예산이 A에서 B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음악이 9억 원에서 6억 30만 원으로 되었고요. 나머지 분야는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원결정액을 보시면 다른 분야들은 거의 다 배정된 예산을 활용하셨고요. 음악은 말씀드렸듯이 9억에서 6억 30만 원만 선정을 했고 연극 분야 같은 경우 당초 24억 5,000만 원에서 1억을 더 받아서 25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뷰 심의까지 하다 보니 억지로 다 소진하는 게 아니라 사업취지에 맞는 단체들만 선정을 하자는 동의하에 24억 5,100만 원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31건 중에 52건이 선정되었고요. 전체예산 52억 5,000만 원 중에 51억 5,100만 원만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9,900만 원이 남았고, 잔액의 활용은 별도의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원신청단체가 많기 때문에 전체 가·부 내용은 붙임자료로 첨부했고,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선정된 단체들만 별도로 뽑았습니다. 여기의 순서는 분야별 그리고 유망을 먼저하고 중견을 했고 (가), (나), (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심의 제척과 회피 현황입니다.

먼저 심의제척은 없었고 회피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결격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격사유는 ‘지원신청서’ 라는 필수서류를 아예 내지 않았거나 지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데요. 14페이지에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7번입니다.

기타 논의사항으로 해 냈는데요. 지난 위원회 회의 때도 비슷한 건으로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단체 중에 수사의뢰 대상 보조사업자가 분야별 심의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로 무용 쪽의 단체이고, 이 단체와 다른 단체 하나가 저희 감사부의 특정감사 대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사의뢰 조치가 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따라서 분야별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저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감사부의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어떤 정보를 받거나 하지 않고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이 1억 원이 지원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 의결해 주신다면 이번 주 중에 발표를 하고 선정된 단체들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등을 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상세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761호 2019년도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정 위원

- 8페이지를 보시면 연극의 심사위원들의 지역이 서울, 서울, 서울, 서울, 경기입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심의규정을 할 때 지역안배, 여성안배, 젊은 층 안배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께서 보도자료 낸 것을 보셨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가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니라 서울문화예술위원회라고 지적 받을 사항 아닌가요? 심의위원들께서 공정하게 잘 하셨겠지만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수궁을 할까요? 저도 이것을 보고 수궁을 못 합니다. 서울 분들이 훌륭하시고 기획력도 좋은 것은 알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위원 구성부터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못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희경 위원

- 다른 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연극분야의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대로 구성이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한 건 전체를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중장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역에서 장벽을 느끼고 진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열어놓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연극 쪽이 다른 분야보다 지역이 덜 선정되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심의위원 풀에서 연극분야의 226개 신청 단체와 관계있는 분들을 배제 한 후 적격자 지정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연극 분야는 심의위원으로 섭외하려고 했던 분들께서 굉장한 부담을 느껴서 고사를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연극분야의 심의위원 구성 시, 지역 쪽 인사가 반영될 수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 분들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덧붙여, 이 사업은 워낙 현장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 심의기준 등을 가중치나 심의기준을 6가지로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다른 분야들은 그래도 조금 지원이 되었는데 연극은 1군대를 빼고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유망단체, 신진단체에 대한 진입장벽의 해소를 목표로 디자인을 했지만, 지역에 대한 부분은 쿼터를 따로 두거나 하지 않아서 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승정 위원

- 저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술위원회 전체에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재부나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진작에 찾아서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결과들이 자꾸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내년 사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결과는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종영 위원

- 이승정 위원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 전에 심사를 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23개 중 강원 1건이 선정되었어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지역을 15%로 한다거나 20%를 한다는 것을 미리 정해 줘야지 계속 이렇게 놔두면 지역에서는 하나도 안 옵니다. 경쟁을 붙였는데 선정이 안 되었다는 대답만을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연극 쪽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보면 지역 인사가 없고, 선정할 때도 지역을 어느 정도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야죠.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위원회에서 정해줘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지역을 15%나 20%로 안배하겠다고 못 합니까? 이 앞전 회의에서도 “왜 부산은 하나도 없냐?”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저희들이 연극 전문가가 아닌 눈으로 봤을 때에도 너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문학 같은 경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지역, 나이, 중견 등을 가급적 고려하려고 하는데, 공연예술 쪽은 그런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희경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히 고려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우리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역을 안배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런 사업이 처음 올라와서 논의하고 의결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종영 위원

-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희경 위원

- 아니요, 이것은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계속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중장기창작지원 지원 대상에서는 지역 안배를 1차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정말 유망한 단체들이어나갈 수 있는 수월성이 중요했죠. 만약 지금처럼 생각을 하신다면 이 사업도 지역안배를 고려해야 된다고 제안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 부분에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심의위원도 정하고 남녀 비율과 연령 비율도 정하거든요.

○이승정 위원

- 동의는 하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치가 지역, 여성, 신진 등을 안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회의록을 보면 수십 차례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음악은 광주도 있고 경남도 있잖아요. 저는 음악 분야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또 심의위원회 구성 뿐 아니라 결과로 봤을 때도 지역 선정이 적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심사가 잘못 됐다.” 라고 비판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지역 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이승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경환 의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를 며칠 전에 봤는데요. 그 보도 자료를 계속 보면 광역별로 1%, 2%로 정도여서 이것을 심의위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선되기는 어려운 과제라는 의견입니다. 말하자면 제도적인 안전장치 같은 것을 심의기준에서 확실히 갖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우리나라 경제구조나 이런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부분도 마찬가지죠. 포괄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지, 수월성이 중요한 부분에서 지역 안배 문제를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승정 위원

- 이 위원님, 지방자치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어떤 데는 10%가 있고, 어떤 데는 100%인데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서울의 서초구나 강남 같은 경우는 100%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강원 화천 같은 곳은 십 몇 % 정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없어야 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을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의 법 규정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공연 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 별로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오늘 연극분야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기봉 위원

- 지원신청건수 대비해서 지원액수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

술 중에 연극은 과반수 가까이 많으니까 선정건수도 보면 연극에 거의 반을 주는데요. 신청건수와 선정건수가 비례를 해요. 이번에 선정된 것 중에서 제가 전통예술만 분석해 봤어요. 왜냐 하면 연극, 무용, 음악의 수월성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통예술 부분은 지역도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전통예술 59건 중에 서울이 15건 중에 6건이 선정되었고요. 전국은 19건 중에 4건입니다. 지역은 25건 중에 0건입니다. 지원건수가 선정건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선정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역의 고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와 같은 통계들은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지역이 제일 많은데 여기에서는 지원건수와 선정건수가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서울은 15건 중에 6건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데는 19건 중에 4건이고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낸 곳은 25군데인데 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시급하게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 지역안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한 사항은 아니었죠. 그랬다가 수월성 부분을 관통해야 하는 창작산실의 하위에서 창작산실과 다른 차원의 다년간 창작의 성과를 내야하는 신규 사업이었으므로 성과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역안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출발지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는 2018년도 자료였습니다. 2018년도에 근거할 때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의 금액대비 지분율은 61% 였거든요.

총 선정건수 2,683건 중에서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선정된 사업의 금액 지분율은 61% 였는데 6기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틀을 세우셔서 지역우선정책을 나름대로 관철해 오셨기 때문에 올해 중간점검을 해 보면 56%정도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정 위원님, 나종영 위원님, 김기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른바 균형발전, 상생발전, 지역안배 등 지역을 근거로 해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대책은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좌절감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 심의 결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희경 위원

- 음악 같은 경우 3억을 아예 다른 분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안타깝지만 심의위원들이 심사할 때에 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수준이 안 되면 선정하지 않았고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만 주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지역안배 등이 이런 사업에 결합되었을 때 과연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수월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승복을 하죠.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정책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지역이나 신진이 30% 이상이 들어가고 특정 성별이 60% 이상 차지하지 못하게 하자는 권고사항을 채택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6기 위원들이 나름대로 지원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초토화된 결과로 나타나면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희경 위원

- 그렇다면 결과에 있어서 심의위원 구성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심의위원 구성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승정 위원님도 그렇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논의는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 이맘때에도 했던 이야기임에도 또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이승정 위원

- 공연 전체를 심의하는 것을 책임지는 사무처의 책임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저희 부서에서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승정 위원

- 작년에는 누가 했어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승정 위원

- 예를 들어서 공연 전체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박종관 위원장

- 공연예술본부장이 대답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정 위원

-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고 일부 개선을 한 곳도 있는데요. 이 내용이 올해도 똑같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이승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대관료지원사업이나 공연장상주단체사업 등은 지역에 대해서 우선 배려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창작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적 안배보다는 프로젝트의 수월성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심의위원회에게 맡겼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단체를 우선 선정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적인 차별성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단위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윤주 위원

- 지역별로 예술생태계를 볼 때 성장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술 위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안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게 의미 있는 것 일까요? 모든 개별사업별로 지역별 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지 저희가 정해야 할 원칙일 텐데요. 심의를 할 때 대상 작품이 수월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심 의위원들이 “이것은 너무 아니다.” 라고 생각해도 지역안배라는 대원칙에 의거해서 그 작품에 지원을 할 것인지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후자의 것이 맞 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김기봉 위원

- 국가재정을 투입할 때 일정정도의 금액이 될 때에는 예비타당성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예비타당성평가를 해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것이 일정부분 이상 나올 때 투입을 하는 데, 거기에도 균형발전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은 지역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지역이 기울어져 있 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라면 수월성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에 대 한 최소한의 배려는 합의할 수 있는 것이죠.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개별사업별로 지역에 대한 안배를 정해놓자는 말씀인 건가요?

○김기봉 위원

- 지역의 신청이 없는데 무조건 지역을 뽑자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 조정을 하면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역 의 심의위원이 들어간 장르도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뽑았고 서울에 있는 장르 쪽에 지 역이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무용 같은 경우는 지역도 3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위원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의 지역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예술의 경우 25건의 지역 신청이 있었고, 전통은 우리가 생각해도 지역이 강점이 있고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역량과 기량을 다 갖춘 단체들인데 하나도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딘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선출 감사

- 저도 결재가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이승정 위원님이 확실하게 이야기 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발표되었을 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음 공모에 응모를 하겠습니까? 새로 위원장 님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사업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인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상이 아니라 심의위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역을 배려한다는 큰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에 있어서 수월성이 그렇게 강조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요? 가령 국제교류에서 한국의 대표로 나가는 경우는 작품성을 많이 보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 3년간 지원을 하는데, 유망, 중견 등으로 어렵게 커나가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과 선발이 이루어져야 지역에서도 더욱 예술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갈수록 출품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강홍구 위원

- 대부분 지역예술을 지원해서 성장시켜야 나가는 것에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안별로 달리 적용이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심사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3년을 지원하는데요. 첫째에 지원하고 그 다음해에 지속가능한지를 판단하려면 수월성이나 조직 외에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지역을 선정했다가 잘못되면 그분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할 겁니까? 저는 지역을 독려하는 것은 맞지만 기계적인 균형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통과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봐서 “이만큼 지원했는데 하나도 안 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지역에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어보이지는 않아요. 이것은 정교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효관 사무처장

- 이 부분은 오늘 심의결과와는 다르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입시에 보면 지역균형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지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 강조되고 제도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서 확실하게 위원회 결과로 만들고 현실과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창주 위원

- 대략적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도 중앙과 지역의 안배가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일률적 적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 충청, 전라, 경북, 제주 등 고정적으로 규정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는 중앙의 수도권과 지역의 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승정 위원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같은 경우는 더욱더 지역에 안배를 하지 않으면 지역의 생태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론 수월성도 중요하죠. 우리가 개별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은 지역의 생태계가 없는 곳을 찾아서 해야 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배제하고 논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희경 위원

- 위원님, 이 사안은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제가 비록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이 사업에 대해서

미처 그 부분을 논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강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단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 사업에서 1차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따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마다 지역안배를 만들든지, 어떤 것이 더 나은 방식인지는 얘기를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수월성에 대해서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되게 놀랍네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연합협의회가 아니고, 1차적으로 예술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창작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역이 취약하다고 해서 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술가들이 각각의 고유한 창작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틀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윤주 위원

-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승정 위원님도 지역성만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희경 위원님도 수월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밸런스를 잘 조율하자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오늘 저희 안건이 굉장히 많은데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찾아주시고요. 자꾸 반복이 되고 수월성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지원정책이지 않습니까? 지역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체감을 주겠어요.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놓친다고 해도 실무진에서 커버를 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안 맞는 것이죠. 저희들이 몇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심의위원을 어떻게 뽑자는 것을 다 했어요. 여성 몇 %, 지역 몇 %로 하자는 것을 논의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참담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하나도 안 올라와요. 지난번에 “부산은 인구가 그렇게 많고 부산은 활발한데도 부산에는 연극 극단이 없느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답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갑시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김기봉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의견 속에 핵심이 있는데요. 지금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에 사업계획을 놓고 논의를 했을 때 심의제도 등의 안배를 가지고 대응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수월성 구조를 살려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결과에 대해 동의가 안 될 정도로 편중되어 나왔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비슷하게 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반복하자면, 전체 2018년도 사업구조에서 서울, 경기 61% 편중은 2019년에 와서 56% 정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의 주된 원인이 청년예술가지원 같은 경우 지역을 명확하게 미리 안배하는 정책을 쓴 6기

위원회의 성과일 텐데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제도가 개량되어서 보다 넓은 범위로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전부 다 동의할 수 있는 지원심의제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762호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을 논의하면서 3가지를 논의해야 하는데요. 두 번째가 제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은 지원순위에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이미 8월 위원회의 전례가 있으니깐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논의해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최혜주 부장은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14페이지 기타 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감사부에서 특정감사 추진을 해서 감사대상이 된 ○이 무용 쪽에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현재 감사부가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기 위해서 참고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차(前次) 회의에서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결과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비슷한 결정을 위원님들께서 내려주실 텐데요. 그랬을 경우 지원금을 못 주는 경우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예산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전차(前次) 회의에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 결과가 10월 중으로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12월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올해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이 지원금은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송시경 예술공간운영본부장

- 올해의 예산은 불용을 시키고요. 내년 예산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끊어서 쓰는 것입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그런데 인력사업은 다릅니다. 인력사업은 금액이 적은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예산은 불용된 것도 있고요. 이 단체가 만약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다시 배정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3년짜리 사업인데

2년이 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봐야 하는데요.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용 분야 같은 경우 예비단체를 선정하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의 경우 신청했을 때 피치못할 사정으로 포기할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말하지는 않았는데 예비단체가 2군데 정도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단체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못 주게 되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예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별도 의결안건으로 올라와 있나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지금 14페이지 기타 논의사항에 수사의뢰 대상 보조사업자 선정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의 지원여부에 대해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데 49페이지의 무용분야 총평을 보면, ○에 대한 평에서 유급직원과 유급 상근단원을 보유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다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금 문제가 된 사항이 이것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감사부에서 확인한 결과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야별 심의를 할 때는 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정해 주시는 사항에 따라서 총평에 있는 부분은 분야별 심의위원회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이 부분은 전차(前次)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셨잖아요? 사안의 성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차(前次) 위원회 방침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사결과에 따른 후속 처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부분은 시행방안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숙 위원**

- 지난번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은 인건비 지원이고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나요?

○**전효관 사무처장**

- 똑같은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똑같이 인건비 관련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심사하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주겠다는 것이죠.

○조기숙 위원

- 모르는 것이죠.

○나종영 위원

- 심사위원이 모른다고요?

○조기숙 위원

- 모르죠.

○나종영 위원

- 이상하네요. 알려줘야지 왜 몰라요?

○강홍구 위원

- 결과가 나와야 알려 주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이에요.

○이승정 위원

- 우리가 수사의뢰를 해 놓고 보조사업자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수사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결론을 내리자는 말입니다. 그 때 가서 12월을 넘기게 되면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박종관 위원장

- 성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 중에서 ○을 유보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후순위를 주거나 아니면 집행하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홍구 위원

- 예, 그렇게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용어 정리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차(前次) 회의에서도 저희들이 ‘수사결과’ 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판결결과에 따라서” 라고 해야 한답니다. 의미는 같은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수사결과는 기소만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나종영 위원

- 여기에 판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기봉 위원

-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관이 수사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것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상위 원칙 아닌가요?

○김선출 감사

- 그런데 이 사안은 공익적 제보죠.

○박종관 위원장

-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8조에 보면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유사한 사안을 가지고 길게 논의를 했습니다.

○강홍구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김기봉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으니까요.

○나종영 위원

- 반대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고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보를 했다가 판결이 나면 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2019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은 원안에서 현재 판결 결과에 따라 지원 ‘가’, ‘부’를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하는 ○을 유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승정 위원

- 저는 단독으로라도 ‘부’로 해 주십시오.

○박종관 위원장

-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찬성 : 5명, 반대 4명)

○이승정 위원

- 제가 추가로 의견을 드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된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항상 막판에 가서 안 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 혼자라도 반대하는 것을 회의록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무엇에 관한 ‘부’인지를 명확하게 해야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명확해야 수정을 하거나 부결을 하든지 하죠.

○이승정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희경 위원

- 지역 안배가 안 되어 있다?

○이승정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논의결과는 보완한다고 했거든요.

○김기봉 위원

- 그것은 향후 제도를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 자체에 대해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종영 위원

- 전체를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김기봉 위원

- 현재는 안건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요.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우리의 의견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강홍구 위원

-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역 안배가 안 되어 있다.”

○이희경 위원

- 지역 안배를 규정에 넣으려면 5월 31일 의결을 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야죠.

○김기봉 위원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됩니까? 저희들이 부결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강홍구 위원

- 그냥 표결로 처리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4표였고 찬성이 5표였습니다.

○강홍구 위원

-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5대 4로 수정(안)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승정 위원

- 회의록에 이름을 남겨 주십시오.

○박종관 위원장

- 최창주 위원, 이승정 위원, 조기숙 위원, 김기봉 위원님이 반대를 하셨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셔서 5대 4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조금 늦었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승정 위원

- 사무처에서는 이 사안이 중대하고 어렵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지역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처장님 말씀하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체육기금)2019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주관처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이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54페이지입니다.

안건명은 체육기금 사업의 2019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주관처 공모지원 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국고나 체육기금의 사업으로 주관처 공모사업이라 당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나 결과 보고를 할 때는 보고안건으로 진행되지만, 이 사업의 경우 다중지원총량 제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결사항으로 판단되어 의결안건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55페이지 부분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의 체육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수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로예술인들의 공연을 지원할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처를 뽑는 사업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보고를 드렸고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장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받은 다음에 문화일반 위원님들께 적격자 지정순위에 의해서 순위를 받았고요. 세 분께서 순위를 주셨기 때문에 평균을 내고 순위에 따라서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를 해서 8월 28일에 지원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57페이지의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4건이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행사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체를 진행하는 주관처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지 않았고 4건이 신청했는데요. 아래의 지원선정 세부내역을 보시면 2개 단체 정도는 이 사업의 취지와 맞게 신청하신 게 아니라 주관처가 나중에 재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 재공모에 직접 지원을 받을 개별사업으로 신청하신 겁

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표를 보시면 2번과 4번이 해당되는데요. 그 사업은 사업의 취지에 맞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취지에 맞게 신청한 것은 2개 단체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였고 (사)한국연극협회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평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장르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특정 장르에 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연예술쪽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분야와 장르, 지역별 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처와 연관된 지회 등이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방면의 사업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58페이지를 보시면 연극협회 같은 경우 다중지원 총량 제한에 있어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 의결 안건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중지원 총량 제한은 3억 원 내외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예기금 사업뿐만 아니라 타 기금이나 수탁사업, 국고사업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한국연극협회의 2019년 수혜내역을 보시면 지원결정액과 최종 산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중지원 총량 제한에 대한 처리 기준을 보시면,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그리고 올해까지는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지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원결정액의 10%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런 사업들을 지원받았고요. 만약 이 사업까지 선정이 될 경우 3억 5,000만 원 정도로 5,000만 원 정도가 초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논의와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762호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주관처 공모지원 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요약을 하면 총량 제한을 넘어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 지원을 할 것인지에 논의를 해 달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정 위원

- 한국연극협회는 작년에 문제가 된 정산은 했습니까?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예, 정산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선출 감사

- 협회의 조직이 정상화가 된 것입니까?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지금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가 아니라 새롭게 구성되어서 하고 있고요. 정산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모두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이게 지원 사업입니까? 이것은 용역대행을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주관처 선정사업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예를 들어 용역사업 같은데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맞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량제한 금액이 3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을 선정하는데 있어 7억이나 10억짜리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연극제처럼 큰 사업의 주관처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전액을 산정할 수 없으니까 그 단체의 개별사업이 아니라 전체사업으로 보는데요. 다만 단체에서 총량 제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금액은 10%로 산정하자는 것이 당초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저희가 총량 제한에 대해서 산정할 때 비평사업 등은 연극협회의 직접 사업이라서 전액을 산정하고요. 다만, 대한민국연극제 등은 저희가 지원금액은 7억 2,000만 원이지만 총량을 산정할 때는 10%인 7,2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승정 위원

- 이 단체 말고는 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김기봉 위원

- 이게 저희들 원칙이잖아요? 3억 원 이내로 제한을 한다. 그런데 연극협회 말고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3억이 넘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3억 원이 넘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제 기억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인정해 주면 연극협회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지금까지 공연 쪽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숙 위원

- 이런 것이 나중에는 무용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사업을 했던 조직에서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지정사업 같은 경우 공연예술제도 각 건별로 의결해 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숙 위원

- 지금 합의된 것이 지정사업을 10%로 해서 토탈 3억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승정 위원

- 아닙니다.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은 단체가 이것저것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요. 이것은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이든 20억이든 3억 이상은 올려서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안 되는지를 따져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과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3억이 넘을 때마다 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3억이라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면 이 액수도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당장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결주문대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승정 위원

- 똑같은 말인데요. 3억 이상은 우리가 살펴보자는 명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부터 하고 필요하면 만들죠.

○나종영 위원

- 다음에 개선할 때는 10%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다 빼면 되잖아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주관처라서 저희도 그것을 계산해 봤는데요.

○나종영 위원

- 그 건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면 되죠. 총량 제한을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조사업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10%를 하자고 했는데요. 그 경우는 총량 제한을 안 받는 것으로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강홍구 위원

-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고요. 지원결정액의 10%를 적용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3억 이상이 되더라도 연극협회에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숙 위원

- 연극 조직이 얼마나 많고 소외된 조직도 많고요. 잘할 수 있는 조직이 많은데 연극협회가 20억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홍구 위원

- 연극협회에서 하더라도 연극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예, 공연 전 장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 위원

- 그러니까 수탁을 받아서 할 뿐이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죠.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참고로 협회의 신청서 내용에는 만약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무용협회나 음악협회 등 각 장르의 대표할 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겠다고 신청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선정되든 저희와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리고 심의위원회 권고 이행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정 위원

- 그것을 고려하시고요. 연극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음악이나 무용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연극만 많이 하는 등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협약을 체결합니까?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예,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봉 위원

- 원로예술인 지원사업과 원로연극제와 다른가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별개의 사업입니다. 원로연극제는 대한민국문화예술제고요. 이것은 수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극제는 연극만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전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등 모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숙 위원

- 일단 선정된 것이니까 넘어가는데요. 이것은 대기업도 아니고 예술단체조직에 20억이 넘게 들어가면 아무리 지정사업이라고 해도 경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극협회가 이런 것을 컨설팅하거나 계획하는 게 협의의 임무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전문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이것은 사실 작년까지 전국 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작년까지 심의를 통했을 때는 했었는데요. 올해는 아예 지원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지원신청 자체가 적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봉 위원

-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소통소위에 접수된 안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늘푸른연극제가 원로연극제로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늘푸른연극제 명칭이 좋은데 왜 바꾸었냐?” 라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극협회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주관처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원로연극제는 작년 주관처가 한국연극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승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산 문제가 있어서 그에 대한 불이익 차원에서 올해는 연극협회가 주관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주관처가 선정되었고요. 다만, ‘늘푸른연극제’ 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연극협회에서 수행할 때 내건 브랜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 주관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문의를 했더니 연극협회에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해서 주관처에서 원로연극제로 추진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원로연극인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협회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해서 늘푸른연극제로.

○김기봉 위원

- 수정했습니까?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지금 협의 중입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다만, 연극협회에서는 자기들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 들어왔고요. 현재 불이익 처분 단체가 직접적으로 운영에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개인자격으로 추천위원을 해 주면 범 연극계의 행사로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추천 받아서 그 분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주관처 공모 지원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안건은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정창호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안건번호 제763호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비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가)의 사업비 지출계획 총괄 현황인데요, 지금 2020년 정부(안)은 약 2,6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약 111억이 올라갔고요, 증가한 주요 원인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부분이 약 100억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에서는 기존에 지역대표공연예술제가 이관되어서 전체 금액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63페이지의 예술경영지원센터 부분이나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부분은 일반회계로 이관되거나 일반회계에서 이관된 차이가 있습니다.

63페이지 (나)번의 공모 대상 사업비 총괄 현황입니다.

2020년 공모대상 사업비는 총 639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공모사업비율은 24.4%입니다.

그래서 예술창작역량강화가 약 51.6%의 공모사업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2번을 보시면 2020년도 공모사업 주요 추진방안이 있습니다.

총 6가지로 적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워크숍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붙임 자료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3번의 2020년도 정시공모 추진 일정(안)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10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해서 24일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심의회는 11월부터 12월이고 결과발표는 12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12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30일 아르코예술극장에서 2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지역설명회는 부산과 충북, 광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2일, 10월 4일, 10월 8일이 되겠습니다.

4번의 2020년도 공모 대상 사업 세부 현황입니다.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대비 변화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차 공모와 2차 공모로 나눠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1차와 2차가 없이 정시공모와 별도공모로 나가게 됩니다. 작년 1차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14개 사업이 나갔는데요. 이번 정시공모 때는 12월 말까지 28개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6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68페이지와 69페이지는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요. 71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 공모사업 주요 추진방침입니다.

위원님과 사무처 워크숍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 달라진 점은 71페이지 세 번째 동그라미에 '책임심의위원회'를 '전담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원래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적용하기로 했던 전담심의위원회를 예술창작아카데미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추가되었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설명자료에 들어갈 안내문구인데요. 현장소통 강화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 5개 소위원회에서 10개 소위원회로 확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심의과정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특히 별도로 2020년도에 신청자와 심의위원 그리고 사무처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통해서 상호 의견교류를 확대할 방안이라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심의 설문조사도 설명 자료에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예술가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부분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과거 저희가 자기부담금 10% 의무비율 문구를 삭제하고 제목이 '자기부담금 제외'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부담금 적용 제외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그래서 개인지원이나 비평 연구, 청년지원 사업 등은 자기부담금 적용이 제외될 예정이고요.

정시공모 추진 일정(안)은 기존에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74페이지와 75페이지도 그대로입니다.

7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원신청 공통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계속 나갔던 부분입니다.

제가 달라진 부분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첫 번째 지원신청 자격에 세 번째 줄입니다.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변화된 내용이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이라는 문구입니다. 올해는 특히 폐기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신청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다)번이 위쪽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분명하게 안내를 해 드리려고 넣었습니다.

(마)번에 지원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기금의 여러 사업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모두를 선정대상에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저희 위원회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오래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완전히 동일한 부분은 거의 없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실질적으로”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라는 문구를 추가했고 그 밑에 보시면 동일 사업에 대한 예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표시를 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79페이지의 (바)번에 행정심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아)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회계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에서 예산계획을 잡을 때 회계감사제도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를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80페이지 표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지원심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선정위원회 구성방식이나 심의위원 섭외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들과 명쾌하게 협의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나)번의 ※표시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빨리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는 특이사항이 없고 83페이지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83페이지 (바)의 심의 방법의 다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예비 대상자 선정 규모는 사업별 지원 대상자의 10%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선정자 결원 발생 시 예비 지원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대로 선정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야가 있는 경우 동일 분야를 우선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용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무용 쪽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을 명쾌하게 넣었습니다.

84페이지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도 기존에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9번의 지원심의 결과 발표 및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데요. 결과 발표 부분에서 ※표시를 봐야 하는데요. 만약 1차 심의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을 때는 매번 위원회 의결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단, 심의결과를 발표하는 사업의 경우 의결 없이 발표”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의 발표내용을 보시면, 워크숍 때 말씀을 나눴던 대로 총평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나)번의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운영의 경우 감사부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을 구체화 하고 일부 보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안은 워크숍과 현장토론회를 거쳐서 위원회 의결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안전번호 763호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숙 위원

- 이미 여러 번 논의를 한 것이고 잘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적시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위법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명료하게 적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서면체결의무 쪽에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부사업별 오리엔테이션 때 각 부서에서 강조를 하도록 다시 한 번 주시시킵니다.

○이희경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62페이지를 보면 지역문화예술진흥의 지역문화예술지원에 아르코공공예술사업이라고 신규가 있잖아요? 신규가 있는데요.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10,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조각품을 만들지 않고 70%를 내면 저희가 기금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그 액수가 올해 100억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기재부와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의 기금이 쌓이기 때문에 공공예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겠다고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예산을 반영했고요. 세부 사업의 수립 방안들은 시각예술부에서 작업 중입니다.

○이희경 위원

- 여기에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이죠?

○전효관 사무처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정기공모에는 포함하지 않고 제도를 연구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의 문화예술의 향유지원에서 신나는 예술여행은 별도공모로 접수를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난번 토론회 때 어떤 분이 1월과 2월은 보릿고개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정이 안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기봉 위원님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죄송합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심의기준에도 있지만 2019년도에 선정된 단체들은 현장모니터링을 모두 받고 있거든요. 피드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1월말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가장 당길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1월말에 평가결과가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이희경 위원

- 그러면 그 사업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그 다음해에 1월에 사업을 할 수는 할 수가 있습니까?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현재로는 그렇게 되면 이월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의 과제로 평가기간을 전체적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평가가 회계연도를 넘어가면 종료는 되는 것이죠? 아니면 1월에도 사업이 있나요?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11월 안으로.

○박종관 위원장

- 평가를 당기게 되면 환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지 않나요?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그런데 올해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60% 정도 평가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가 거의 9월 10월 11월에 몰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물리는 게 예산이 늦게 나와서요. 보통 농어촌 같은 경우 1월과 2월에 많은 수요가 있는데요.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이야기 하셨거든요.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해당 단체의 대표님과 담당자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게 사실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1월과 2월에 바쁜 쪽도 있거든요. 2019년도에도 최대한 당겼는데도 3월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평가기간 자체를 더 앞쪽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현재 11월이 좀 당긴 건가요?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예, 이번에도 한 달 이상 당긴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김기봉 위원님이 현장토론회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김 위원이 답변을 안 하셨으면 위원장인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 하면 물리적으로 당길 수 있다면 당기는 게 맞아 보였습니다.

○김기봉 위원

- 이 사업은 창작지원이 아니라 향유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향유를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시점에 제공되는 게 맞고요. 특히 농촌형, 그러니까 모든 신나는 예술여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농촌형은 농한기와 농번기가 있는데 농한기가 주로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사업을 하면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사업공고가 그것과 맞지를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효관 사무처장

- 그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것의 취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사실 농촌형뿐만 아니라 기준을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가와 연동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면 농촌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2021년도 사업부터 지금의 그런 문제 체계에 맞춰서 평가 등을 당겨서 10월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박종관 위원장

- 김기봉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조금 당기면 사업도 당겨지기 때문에 평가를 내년 이 시기에 또 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더 당겨서 현장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다만, 2020년 사업은 11월 정도까지 당길 수 있거나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종국 순회사업부장

- 사업의 방향성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마지막 질문입니다.

72페이지에 심의 공정성 제고라는 파트에 심의과정 공유 확대와 설문조사 실시라는 항목을 넣었는데요. 공정심의 설문조사 실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의과정 공유 확대라는 것을 이렇게 공표할만큼 내부 토론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왜냐 하면 뒤의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는데요. 규정을 읽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비밀을 지켜야 하는 쪽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심의과정을 공유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의 공정성 제고에 공유 확대가 도움이 될까? 다른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것이지 심의 공정성 제고와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정을 공유한다는 게 심의위원, 신청자, 사무처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심의위원이 다시 나와서 신청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좋아 보이지만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래 심의과정 공유 확대는 그동안 저희가 외부에 오해를 준 것 같아서 기본적인 방향이 가능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심의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심사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을 다 알게 된 다음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했다. 지난번 워크숍 때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심의포럼이나 심의스토리 등의 자리를 통해서 신청자는 신청자의 입장도 있고 심의위원이나 사무처에서도 어려운 입장도 있는데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신청자 양식도 직접 써보고요. 뭐가 불만이고 뭐가 어려운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워크숍 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다보니까 들어갔는데요. 위원님께서 약간 이해가 안 되신다면 문장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실제로 공연장상주를 지역문화재단에서 심의하는데요. 대상자 전체를 그냥 심의위원들과 섞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정성 같은 유지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오픈해서 심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아니면 심의위원은 제외하고 예술가와 예술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심의위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많이 부담은 되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알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신청예술가들 중에 상당수는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값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무엇을 우려하시는지에 대해 인지를 했으니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출 감사

- 72페이지 자기부담금 적용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제외 확대” 라고 하면 문제가 있나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저희가 사업설명자료로 나가는 문구는 이런 식이 아니라 설명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 자료로 만들다보니까 이런 데요. “적용제외 확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요. 유료티켓이나 창작 등 유료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부 검토를 해 보니까 자부담과 수익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쓰면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나종영 위원

- 심의 공정성 제고 부분에서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하면 실제로 심의기준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이 강조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과로 다 해 놓고 심의한 후에 피드백을 하자는 것은 공정성 제고는 아닌 것 같은데 심도 있게 문장을 다듬어 보세요. 그리고 감사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부담금 적용제외를 한다고 해 놓고 뒤에는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원 결정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부담금 적용제외라는 문장 속에는 안 맞는 말이죠. 적용사업을 확대한다고 해 놓고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제외확대로 하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렇죠. 그러면 밑의 단서조항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김기봉 위원

- 72쪽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있어서 서약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관련 교육을 필수화” 라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선정되어진 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봉 위원

- 필수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선정된 사람들만 상대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지원제도 전체 개요와 관련된 일이니까 이렇게 변화 발전한다는 부분을 넣는 게 어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교육을 필수화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의무화가 아닌 필수화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신청서 제출부분은요?

○김기봉 위원

- 서약서 제출은 의무화로 하는데요. 관련 교육은 필수화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교육을 의무화라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필수화로 하겠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 부분에 관해서 성평등소위에서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성으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과연 좋은 것인가?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콘텐츠 기회를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 단체별로 받았다는 인증서 같은 것을 제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영진위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약서도 아예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나가야 되니까 이 얘기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김기봉 위원님 제시한 안에 동의를 하시나요?

○강윤주 위원

-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보완을 하고요. 그렇지만 내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성평등 소위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서약서 제출은 의무화고 교육은 필수화입니다.

○김기봉 위원

- 지금 프로그램 부분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일단 올해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동의를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를 명확하게 추가하라. 이렇게 하면 위법이라는 것을 명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의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이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경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냐?” 열린 심의를 하거나 과정을 공개한다고 할 때 그것이 투명성을 얼마나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는 개선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순회사업의 문제는 2021년까지 현재보다 더 당기는 안으로 하고 2020년 심의를 올해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님이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공정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여러 개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제외확대로 정정하겠다고 공정심의부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정정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서약서 제출은 의무화하고 교육은 필수화 하는 것으로 하는 게 현재까지 나온 의견입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매주 마지막 금요일에 하던 회의를 월요일로 변경한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 워크숍과 현장 토론회를 하면서 눈에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심의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심의제도의 성과는 순전히 6기 위원회 위원님들의 성과이십니다.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보강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견과 반대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 개정(안)입니다.
이어서 정창호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안건번호 764호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 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심의업무의 기본 원칙을 보존하고 제척 및 회피사유 근거규정의 세부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90페이지를 보시면 기존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은 국회나 정치권 외부에서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막고자 만들었던 취지였는데요. 4조 기본원칙의 3항을 보시면 “심의관련자를 제외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심의자료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2개의 조항으로 나눠서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뀐 기본원칙 제4조 3항을 보시면 “결재 및 의결 시를 제외하고는 심의자료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항에 “심의관련자는 부여된 직무 외의 정보를 상호 요구하지 않는다.” 즉 여기에서는 지원심의 처리 기준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과 사무처와의 관계 그리고 사무처 부서의 업무분장에서 각각의 지원심의 업무를 각각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불필요한 직무 외의 정보는 교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게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의자료라고 하면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 2조에 용어의 정리에 나와 있는데요. 지원신청서가 될 것이고요. 지원신청자 및 심의위원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심의진행을 위한 내부 행정 검토자료 결과와 심의된 내용, 심의결과를 말하겠습니다.
심의 관련 자료는 참고로 위원회 임직원,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고요. 해당 심의 관련 사업의 심의위원도 포함되는 폭넓은 범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희경 위원

- 다음 안건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안건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계속해서 정창호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안건번호 제765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규정 정비 컨설팅 연구용역 의견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같은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 4조를 보시면 기존의 내용을 구체화 시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말씀드리면 제7조 4항이 되겠습니다.

7조 4항을 보시면 기존에 없었던 선정위원회와 관련된 근거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후보자 선정위원회와 관련된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심의 처리규정이나 세부규정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것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서는 심의위원후보단과 동일하게 7개 분야에서 연극·뮤지컬로 되어 있는 뮤지컬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부분을 추가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호 같은 경우 과거에는 2호에 문화예술 유관 공공기관 소속의 경우 후보자 풀이 없더라도 모셔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요. 융복합 문제도 생기고 문화예술 쪽에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위를 확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후보단 풀에 들어있는 것을 외부에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과도한 제한인 것 같아서요. 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되셨을 경우에는 당연히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지만 후보단 풀 자체의 내용은 비밀유지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외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크숍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원칙적으로 심의결

과를 발표할 때 어떤 심의위원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일부 사업 같은 경우 사전공개 예외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보시면 서면 심의부분에 대한 구체화 부분이 있고 대리출석 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조를 보시면 유관기관 대상 정보공개를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내용은 저희 지원사업의 성과 공유나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추가로 다른 기관에서 우리 기관에게 중복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중복지원 검토 등을 위해서 유관기관과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 4항의 6호 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6호에 “심의위원 명단은 심의결과에 대한 공표가 있기 이전까지 비공개로 한다. 단, 책임심의위원제 등 사전 공개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등’ 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책임심의위원제가 전담심의위원제로 바뀌어서 이대로 나두고 ‘등’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전담심의위원제 등’ 으로 바뀌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의 적시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 필요한 경우 사전 논의할 수 있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다가 눈에 띄었는데요. “왜 굳이 언론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나?” 그러니까 ‘등’ 이지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부분에서 뒷부분으로 옮겨졌는데요.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기타 분야 라고 하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언론이 들어간 것은 뭔가 심의위원회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소위에도 언론인이 한 분 와서 계신데요. 물론 그분은 언론인으로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알권리를 이유로 쓸 수가 있잖아요.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언론이 포함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언론 부분은 아마 창작보다 일반 쪽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옮긴 것이고요. 언론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홍보나 대외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 기관은 아무래도 대내외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이고요.

○이희경 위원

- 심의위원으로요? 여기는 심의위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문화일반 분야입니다. 문화일반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아니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아닙니다.

○이희경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권고사항에서 말씀하신 98페이지 11조 6항인데요. 저는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읽었거든요.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심의위원의 대리인이 출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무슨 말인가요?

○나종영 위원

-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희경 위원

-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종영 위원

- 심의위원을 선정하잖아요? 심의위원이 아닌 자는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희경 위원

- 그러면 “심의위원은 대리출석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쓰면 되는데요. “위원장은” 주어가 위원장이잖아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대리출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수정하는 게 더 명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99페이지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열린 심의를 얘기하면서 심의내용은 공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은,

○김기봉 위원

- 회의록에는 특정 단체와 특정 예술인들에 대한 디스나 정보 등이 담겨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효관 사무처장

- 보통 정보공개에서 개인정보나 특정 단체가 언급된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제 말씀은 이 얘기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토론과정.

○박종관 위원장

- 이희경 위원님 말씀은 과정은 공개를 하면서 회의록은 오히려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배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나종영 위원

- 우리가 심의위원 평가를 공개하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내부적으로만 공개합니다.

그런데 2안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취지는 맞는데요. 심의의 공정성이나 평가 등의 비밀유지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공개회의를 하다보면 불편한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일일이 공개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취지로 넣은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이해했습니다.

○나종영 위원

- 5조의 심의위원 구성에 “심의위원회는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와 사무처 직원 1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처 직원도 심의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는 없어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이 부분은 기존에 계속 있었던 조문인데요.

○나종영 위원

- 조문을 수정하면서 명확하게 해야죠. 심의위원인 것처럼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희경 위원

-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나종영 위원

- 사무처 직원이 심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사무처 직원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으로 위원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책임심의위원제를 했을 때 이 조항은 약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굳이 반영된 것은 문장 자체의 해석이 어려우니 명쾌하게 하라고 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열어두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나종영 위원

- 사무처 직원은 간사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게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책임심의위원제를 할 때는 직원도 참석을 해서 심의를 했던 것이죠. 그게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박종관 위원장

- 남아 있는 겁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런데 책임심의위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이 심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나는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나종영 위원님의 말씀은 사무처 직원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규정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책임심의위원이나 전담심의위원을 둔다고 하고 전담심의위원은 전문가 또는 사무처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풀어놓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나종영 위원

- 그것도 아니죠. 전담심의제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면 직원들은 사전 정보나 행정 절차에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말씀의 핵심은 사무처 직원은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나종영 위원

- 그렇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저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그동안 이 조문은 내용의 명료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바꾼 내용이고요. 사실이 조항은 사문화 되어 있으면서 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뒤에 보면 95쪽의 6조 5항에 “위원장은 제5조 2항에 따라 사무처 직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할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나종영 위원

- 왜냐 하면 각 장르에 대해 직원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가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공정성 제고와 상충되는 부분이죠. 왜냐 하면 그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조로 파견되는 부분과 심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사무처에서 누구도 심의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조문 자체는 계속 있었던 것이었고요. 만약 그것이 불편하시다면 이 조문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조문이 밑줄 쳐져 있는 이유는 주어와 술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판단한 것인데요. 저희가 위원회로 전환하는데 외국 사례를 검토했는데요. 직원들을 단순 행정요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십 수년 간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 등에 대해 일정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규정상 넣어 놓은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해 보죠. 저는 사무처 직원이 행정적인 절차를 보조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사무처 직원의 포함 여부는 위원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계속 유지하려면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5조 2항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5조 2항에 “사무처 직원의 포함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그렇네요. 그러면 그 뒤의 6조 5항은 삭제할 하는 것이죠.

○이희경 위원

- 예.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95페이지에 4항 2호에 보면 심의위원후보단 구성분야 중에 문화일반과 다원예술이 빠져 있거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원예술 등’으로 해서 다원예술을 추가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몇 페이지입니까?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95페이지입니다.

○이희경 위원

-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으로 순서를 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봉 위원

- 98페이지를 보시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서면결의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 심의위원 추천의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부분이 서면으로 많이 옵니다.

○이희경 위원

-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회의를 대면심의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사업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변경 심의에 대해서.

○박종관 위원장

- 그것만 가지고 또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서면의결을 하죠.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사무처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기봉 위원

- 서면으로 ‘가’, ‘부’를 요청하는 것이 서면심의인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여기까지 논의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론을 그냥 기타에 포함할 것인가에 관련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의 심의참여 문제는 5조 2항인데요. ‘위원장’을 ‘위원회’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 5항은 삭제하고요. 95쪽의 ‘다원예술’을 추가하는 문제까지 위원님들의 의견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희경 위원

- 11조 6항.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11조 6항도 문구를 바꾸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심의위원회 회의에 심의위원이 대리인이 출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면 주체가 없잖아요?

○나종영 위원

- 대리인이 출석해서는 안 된다.

○전효관 사무처장

- 문구 정리는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조문의 의미가 명확하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요.

○이희경 위원

- 언론은 괜찮은 것인가요? 저는 계속 이상한데요. 심의위원회에 언론 분야가 들어온다는 것은.

○전효관 사무처장

-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언론은 여러 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냥 열어두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언론은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조 6항까지 포함해서 총 4개의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감하고 오류가 있으면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의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는 없으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지원 관련 일부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보류의 건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짧게 보고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전차(전차) 회의에서 ○에 대한 건이고요. 결과가 나온 시점까지 유보를 한다는 내용을 준용하고요. 오늘 ○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5월 말에 올해의 신작 무용분야에서 결정된 단체 중 일부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보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판결시점까지 지급을 보류하고 2019년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로 한다는 것이고요. 2019년 내 판결 불가 시 해당 보조금은 불용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차(전차) 회의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해 주셔서 오늘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 보조금에 대해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유보한다는 것이 의결주문사항입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모두 동의하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모든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지금이 6시 35분 정도가 되었는데요. 보고안건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만 5분 정도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5분 정회)

(18시 40분 속개)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결안건은 모두 처리를 했고요. 보고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소위원회 임기에 따르면 재적위원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새로 구성이 되면 해당 기수의 소위원들은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된 후 한 달까지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새로 선임되는 7기 위원님들이 오셔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텐데요. 6기 위원님들의 임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서 소위원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이희경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는 모두 다시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님이 교체되실 경우예요.

○박종관 위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7기 위원님들이 선임되면 새로 구성이 됩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지금 소위는 한 달 이내에 종료가 되고요. 새로 소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강윤주 위원

- 언제 시작을 했는지와 상관없어요?

○전효관 사무처장

-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일부 위원님들이 바뀌시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위원장님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고요.

○김기봉 위원

- 문제는 현장소통소위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장소통소위는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를 하고 임기 1년으로 했는데요.

○나종영 위원

- 소위원회 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과 관계없이 임기대로 가야죠.

○박종관 위원장

- 현장소통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혼란과 혼동이 있을 텐데요. 그때 가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세부 구성을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왜냐 하면 임기가 몇 달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연속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하고요. “특별하게 위원장이 바뀌니까 소위원회를 그만 두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계속 가야 합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위원이 추천해서 소위원회에 들어온 분들은 그게 가능한데요. 현장소통소위는 공모를 할 때 임기가 1년이라는 것을 공개했기 때문이에요.

○나종영 위원

- 그것도 보장해 줘야죠.

○조기숙 위원

- 보장해 줘야죠.

○이희경 위원

- 그리고 다들 임명장을 받으셨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오늘 보고사항으로는 6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처장은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105페이지를 보시면 6개의 안건이 보고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위원회 중장기비전(안)에 대해서 지난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에 대해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을 선정했다는 것이고요. 주관처와 수행단체 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2개는 소위원회 결과 보고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논의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밑의 5개는 크게 논의를 할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간략하게 보고를 받아도 크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원심의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홍구 위원

-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기숙 위원

- 그냥 읽으면 되니까 서면보고로 대신하시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죄송한데요. 허락해 주신다면 두 번째 보고안건의 제목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중간평가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사업이 여러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꼼꼼히 체

크를 하지 못해서 보고안건 제목이 잘못 올라왔습니다.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위원회의 결과보고 때 수정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안건을 수정하겠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감사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첫 번째 보고안건입니다.

증장기비전(안)이고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비전체계를 만들어서 논의를 했고요. 지난 255차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비전문구에 대해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중에서 ‘창의성’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것이고요. 그리고 전면에 나온 ‘실험성’을 세부 과제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전략과제 발표와 관련하여 “예술창작 환경의 근본적 개선”이라는 표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08페이지를 보시면 비전문구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3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문구를 보시면 “예술현장의 동반자, 예술과 삶을 잇는 아르코”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가의 창조를 삶의 기쁨으로”입니다.

세 번째는 “아르코와 함께, 오늘 만나는 내일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3대 전략목표 중에서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을 첫 번째 전략목표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밑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 구성 체계나 전략 체계도를 바꿔서 10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비전문구와 세부과제들을 조금 더 구체화한 과정입니다.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전선포식이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10월 22일로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10월 22일 2시부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부 행사내용은 논의 중인데요. 111페이지를 보시면 ‘축사’, ‘영상’, ‘비전발표’ 등의 순서대로 하고 리셉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사 자체를 하고 후속 대응까지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비전문구 관련해서는 3개의 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사무처장이 보고를 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보고사항이지만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주 위원

- 지난번에 김기봉 위원님께서 제 책의 제목을 받아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빠졌네요. “세상을 바꾸는 예술” 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예술”로 가자고 제안을 하셔서 제가 수락을 했었는데요.

○전효관 사무처장

- 10여 개를 놓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 사무처와 위원장님의 논의과정에서 3개로 압축을 해 보자는 것이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이것은 너무 관용적인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사실 비전문구 중에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서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숙 위원

- 비전 문구는 각자 생각을 해서 우리끼리 공모를 하죠. 지금 여기에서 확 오는 것은 없거든요.

○강윤주 위원

- 직원들의 의견인 것이죠?

○강홍구 위원

- 10개를 모두 올려봐 주세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전효관 사무처장

-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 과 ‘사람’이 어떻게 달라요?

○조기숙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종영 위원

- 여기에 보면 ‘국민’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전효관 사무처장

- ‘국민’ 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요. 국가기관은 모두 ‘국민’ 이라는 말을 씁니다.

○김기봉 위원

- 문화비전2030을 만들 때 '국민'을 모두 '사람'으로 바꿨어요.

○조기숙 위원

- 그것은 숙제로 남기죠.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논의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수순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지적하셨던 창작표현의 수호의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목적성이 분명한 전략과제를 선포하자는 것은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다 괜찮거든요. 그런데 비전 문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저희들이 비전(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강조하는 중에 6대 전략과제, 15개 세부과제 같은 경우 표현이 그 결과 체계와 맞게 조금 더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정되는 대로 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르크비전(안)은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선포식에는 모두 와야 하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오셔야죠. 외부 인사도 많이 모시는데요. 위원님들이 꼭 오셔야 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위원님들이 오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오셔야죠.

○이희경 위원

- 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시나요?

○강홍구 위원

- 초청장도 보내야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아르코비전(안)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제 소위원회 활동 보고가 남았나요?

○이희경 위원

- 이것은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 대해서 최창주 위원님께서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창주 위원

- 없습니다.

○강윤주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평등 소위원회에서 두 번째 오픈테이블을 하는데요. 10월 12일에 진행을 하며 이번에는 문학, 공연, 시각분야에서 지난 4년 치의 지원결과를 분석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장님과 위원장님이 못 오셨는데 꼭 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매우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최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창주 위원

-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 보고도 접수를 받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제 모든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마쳤고요.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22일 비전선포식 때 불가피하게 모이실 것이고요. 공정심의회장은 심의를 진행하는데 회의날짜와 관련해서 상관이 없겠어요?

○전효관 사무처장

- 차기 위원회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차기 위원회 회의를 25일에 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심의 진행과 관련하여 10월 전체위원회를 25일에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공정심의부장이 말씀해 주시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지금 예정으로는 저희가 9월 30일까지 후보단 신청을 받고요. 가능한 10월 중순인 15일이나 20일 사이에 선정위원회를 하고요. 10월 달에 의결해 주실 때 최종 결과에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11월 심의부터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 전에 위원님들께 선정위원회 구성방식, 섭외순위 절차 문제와 전담 심의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이시거나 서면으로 하는 것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위원회를 따로 개최한다고 하시면 10월 15일 전에 모여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모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희경 위원

- 선정위원회를 가진 다음에 저희가 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은 구성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아니면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간단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서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서면으로 해야 되겠네요.

○강윤주 위원

- 이게 토의가 필요한 사안인가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지난 위원 워크숍 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조기숙 위원

-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시면 적당한 날짜를 정해 주시죠.

○강윤주 위원

- 10월 며칠 이전이에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선정위원회를 10월 중순에는 해야 합니다.

(회의 일정 조정)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10월 11일에 임시위원회를 열고 정기위원회는 25일에 하는 수순으로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시간은요?

○전효관 사무처장

- 시간은 오늘처럼 4시에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4시로 하겠습니다.

○이회경 위원

- 이것은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그날은 의결을 해야죠. 위원님 두 분이 빠져도 개회는 됩니다.

○이회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김혁수 위원님이 못 오실 수 있으니까 3명이네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개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효관 사무처장

- 우선 정해놓고 위원님들 시간을 체크해서 안 되면 다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간담회로 하고 서면의결로 진행해야죠.

○전효관 사무처장

- 예.

○강홍구 위원

- 25일 전체회의도 4시에 하실 겁니까?

○이희경 위원

- 원래대로 3시에 하죠.

○김선출 감사

- 비전선포식 때 몰아서 하면 안 됩니까?

○박종관 위원장

- 임시위원회요?

○이희경 위원

- 그게 안 되는데요. 왜냐 하면 장르별로 회의를 해서 심의위원단을 결정해야 하잖아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10월 25일에는 후보단 선정결과를 의결 받아야 합니다.

○이희경 위원

- 그렇죠. 의결해야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전효관 사무처장

- 아무래도 직원들 리허설도 해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10월 11일은 4시고요. 25일은 3시로 정했습니다.

(의사봉 3타)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오늘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공모 지원대상 결정은 반대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 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면밀히 설계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고요. 수월성 중심의 구조를 갖고,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수월성에만 의지해서 심의를 할 경우 지역은 거의 완벽하게 소외되는 현상에 정말 지역에 소속된 예술가로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늘리지 않는 연장선상에서는 그 어떤 제도도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짙게 들었고요. 오늘 의결은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회의 시스템을 스스로 다 허물어 버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큰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목표를 그렇게 정하며 지금 심의에서 생긴 결함은 앞으로 제도를 계속 보완해서 지금 있는 제도가 조금 더 널리 유용하게 쓰이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노조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03분 회의 종료)